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24

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김태년 · 김영배 · 김준형

김태선 · 김병기 · 권칠승

한민수 · 김영진 · 박지원

송기헌 · 박용갑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제노동기구(ILO)는 1952년부터 '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'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과 해고 금지에 관한 규정(제23조)만을 두고, 일반적인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·단체협약 등에 따라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질병휴가를 적용받을 수 없음. 이에 따라 상당수의 근로자는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의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(질병휴가)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근로자의 유급 질

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등)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62조의2에 따른 질병휴가

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2조의2(질병휴가 및 지원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(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한다)의 치료 및 요양의 목적으로 휴가(이하 "질병휴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의 기간은 질병휴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 - ② 사업주는 질병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질병휴가 기간 동안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국가는 질병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"질병휴가 급여"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된 질병휴가 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 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.
- ⑤ 질병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.
- ⑥ 근로자가 질병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관계 서류의 작성·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⑦ 질병휴가의 신청방법·절차와 질병휴가 급여의 지급 요건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9조제1항 중 "제65조"를 "제62조의2제2항, 제65조"로 한다.

제116조제2항제2호 중 "제66조"를 "제62조의2제1항, 제66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 ① 사용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 ① ---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시하여야 한다.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4의2. 제62조의2에 따른 질병휴 가 5. (생략) 5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62조의2(질병휴가 및 지원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(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한다)의 치료 및 요양의 목적으로 휴가(이하 "질병휴가" 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 연 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주 어야 한다. 이 경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의 기간은 질병휴가 기간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.

- ② 사업주는 질병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질병휴가 기간 동안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국가는 질병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"질병 휴가 급여"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① 제3항에 따라 지급된 질병 휴가 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 서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 급한 것으로 본다.
- ⑤ 질병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 정이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.
- ⑥ 근로자가 질병휴가 급여를

제109조(벌칙) ①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 1조의3, 제52조제2항제2호, 제5 6조, <u>제65조</u>, 제72조 또는 제76 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(생 략)제11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14조, 제39조, 제41조, 제4
 2조, 제48조, <u>제66조</u>, 제74조
 제7항·제9항, 제76조의3제2
 항·제4항·제5항·제7항, 제

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관계
서류의 작성·확인 등 모든 절
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⑦ 질병휴가의 신청방법・절차
와 질병휴가 급여의 지급 요건
•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
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
제109조(벌칙) ①
<u>제62조의2제2항, 제65조</u>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1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
으)
②
1. (현행과 같음)
2
<u>제62</u> 조의2제 <u>1항</u> ,
<u>제66조</u>

91조, 제93조, 제98조제2항 및	
제99조를 위반한 자	
3 · 4. (생 략)	3·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